

제 1643 호  
1992. 3. 23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이 해 원  
편집인 : 공 보 관 이 상 진  
전 화 : 731-6111~3  
인 쇄 : 한국컴퓨터산업(인쇄)주식회사  
전 화 : 273-8111~3

# 시 보

## 차 례

### ◎ 조 례
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|
| 제 2889 호 |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          | ..... | 3 |
| 제 2890 호 |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  | ..... | 3 |
| 제 2891 호 |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    | ..... | 3 |
| 제 2892 호 |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         | ..... | 4 |
| 제 2893 호 |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           | ..... | 4 |
| 제 2894 호 |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| ..... | 4 |
| 제 2895 호 | 서울특별시유봉근대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     | ..... | 5 |
| 제 2896 호 |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    | ..... | 6 |
| 제 2897 호 | 서울특별시풀가안전기금의직립과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  | ..... | 6 |
| 제 2898 호 | 서울특별시종합구판장용자금지급조례폐지조례       | ..... | 6 |
| 제 2899 호 | 서울특별시유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        | ..... | 6 |

(이면계속)

|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공<br>람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서울특별시

“발길은 일터로 눈길은 세계로”
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제 2900 호 |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         | 7  |
| 제 2901 호 |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증개정조례  | 8  |
| 제 2902 호 |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증개정조례         | 8  |
| 제 2903 호 |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증개정조례    | 9  |
| 제 2904 호 | 서울특별시증기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        | 9  |
| 제 2905 호 | 서울특별시지하철공채조례증개정조례         | 9  |
| 제 2906 호 |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증개정조례      | 10 |
| 제 2907 호 | 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 | 10 |
| 제 2908 호 |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증개정조례    | 10 |
| ⑤ 규 칙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제 2457 호 | 서울특별시소송사무처리규칙증개정규칙        | 11 |

|        |
|--------|
| 조<br>례 |
|--------|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2. 3. 23

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Ⓢ

**◎서울특별시조례제2889호**

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  
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제1호나목 중 “의회사무국”을 “외회사무처”로 하고 제1항제4호나목 중 “시민생활국”을 “청소사업본부”로 한다.  
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.....  
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업할 수 있다.

부  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2. 3. 23

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Ⓢ

**◎서울특별시조례제2890호**

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

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외회사무국”을 “외회사무

처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“사무국장”은 “사무처장”으로 한다.

부  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 관한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2. 3. 23

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Ⓢ

**◎서울특별시조례제2891호**

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 관한

조례증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 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및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여비) ①의원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 (이하 “본회의”라 한다)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, 국외여비, 회의참석여비 및 관내출장여비로 구분한다.

제7조(회의참석여비 등) ①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 지급하는 여비는 별표 1의 현지교통비 전액으로 하고,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.

②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내로 출장할 때에 지급하는 관내출장여비 또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. 다만, 관내 출장시 관용차량을 이용한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부  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. 1. 1부터 적용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 회사무처 설치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2. 3. 23

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⑨

## ◎서울특별시조례제2892호

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증개정조례  
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의정과”를 “의정담당관”으로, “의사과”를 “의사담당관”으로 하며,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사무처장 밑에 공보실을 두며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제5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제6조 내지 제11조로 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  
제5조(공보선) 공보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.

1. 의회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

2. 의정활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

3. 출입기자 및 보도에 관한 사항

4. 도서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제6조(종전의 제5조)의 제명 및 본문 중 “의정과”를 “의정담당관”으로 하고, 동조 제4호 중 “의전 및 홍보”를 “의전”으로 하며, 동조 제8호를 삭제한다.

제7조(종전의 제6조)의 제명 및 본문 중 “의사과”를 “의사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4조 관련 <별표>의 일반적 4급 정원란 “13”을 “14”로 하고, 동 정원 내용 중 “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직 10”을 “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직 11”로 한다.

일반적 5급 정원란 “9”를 “12”로 하고, 동 정원 내용 중 “지방행정사무관 8”을 “지방행정사무관 11”로 한다.

일반적 6급 정원란 “15”를 “17”로 하고, 동 정원 내용 중 “지방행정주사 13”을 “지방행정주사 15”로 한다.

일반적 7급 정원란 “24”를 “26”으로 하고, 동 정원 내용 중 “지방행정주사보 22”를 “지방행정주사보 24”로 하며, 일반적 소계란 “68”을 “76”으로 한다.

기능적 10등급 “지방사무보조원(조무) 18”을 삭제하고, “지방사무보조원(필기) 4” 및 “지방위생원(사역) 4”를 신설하며, “지방사무보조원(타자) 8”을 “지방사무보조원(타자) 18”로 하고, 총계란 “144”를 “152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2. 3. 23

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⑨

## ◎서울특별시조례제2893호

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  
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 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대학”을 “대학교”로 하고, 제9조 중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2. 3. 23

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⑨

## ◎서울특별시조례제2894호

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 운용조례증개정조례  
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

제 1643 호

시

보

1992.3.23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              | 전역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"로 한다. |
| 제1조 중 "제9조"를 "제21조"로 한다.          |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    |
| 제6조 중 "제12조"를 "제18조"로 한다.         | 부 칙                  |
| 제8조 중 "제출하여야 한다"를 "제출하여야 한다"로 한다. |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 |
| 야 하며 결산임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
## (별지 서식)

기 관 명

문서번호 :

(전화번호)

시행일자 :

수 신 : 서울특별시장  
제 목 : 의료보호기금보조신청

발신 : 구청장 ( 1 )

\*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의 보조를 신청합니다.

|   |       |  |       |
|---|-------|--|-------|
| 사 업 명   |       |  |       |
| 사 업 기 간   |       |  |       |
| 사 업 개 요   |       |  |       |
| 신 청   | 지 원   | 보 조 금  | 대 불 금 |
| 금 액   | 내 역   |  |       |
| 산 출   |       |  |       |
| 기 초   |       |  |       |
| 대 불 상 계   | 금 환 회 |  |       |
|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 |       | ◎서울특별시조례제2895호<br>서울특별시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 조례증개정조례<br>서울특별시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조례 증<br>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br>제2조제3항제1호 중 "건설관리국장"은 "주 |       |
| 1992. 3. 23<br>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⑩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11-5   |       |

“백국장”으로 한다.  
제6조제2항 중 “물가지도등당판”을 “상공  
과장 또는 농축과장”으로 하고 “소비자보  
호개장”을 “상정계장 또는 농수산물 유통  
계장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 
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를  
이에 공포한다.

1992. 3. 23  
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⑩

## ⑤ 서울특별시조례제2896호

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 
조례증개정조례

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  
증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(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 
이상인 대규모 소매점에 한한다)의 개설  
허가”를 “및 빌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 
의한 도매센터의 개설허가 또는 매장면적  
300제곱미터 이상의 중실허가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3인”을 “15인 이내”로 하  
고, 동조 제2항 본문 중 “건설관리국장”  
을 “주택국장”으로 하고, 동항 제2호 중  
“2인”을, 제3호 중 “2인”을, 제4호 중 “3  
인”을 각각 삭제하고, 동항 제4호의 “관  
련업체 대표”를 “관련업체 단체대표”로  
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만, 관련업체 단체대표는 중소기업 기본  
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인  
도·소매업자 1인 이상을 포함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 
물가안정기금의책립과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  
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2. 3. 23  
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⑩

## ⑥ 서울특별시조례제2897호

서울특별시물가안정기금의책립과관리에  
관한조례폐지조례

서울특별시물가안정기금의책립과관리에관  
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 
종합구관장용자금지급조례를 이에  
공포한다.

1992. 3. 23  
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⑩

## ⑦ 서울특별시조례제2898호

서울특별시종합구관장용자금지급

조례폐지조례  
서울특별시 종합구관장용자금지급조례는  
이를 폐지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 
유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를 이에  
공포한다.

1992. 3. 23  
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⑩

## ⑧ 서울특별시조례제2899호

서울특별시유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  
폐지조례

서울특별시유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는 이  
를 폐지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

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  
1992. 3. 23  
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④

### ◎서울특별시조례제2900호

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 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의 방법,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산출, 기타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유기동물의 보호 등) ① 구청장은 도로,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들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포획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에 보호하거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보호를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, 연령, 성별, 특징, 포획장소, 시간, 보호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동물을 동물원 등에 기증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매각대금은 해당구의 세입으로 계산한다.

④ 구청장은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하였을 경우에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(이하 "공수의"라 한다)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.

제3조(보호시설)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동물보호 관리인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동물보호 관리인(이하 "관리인"이라 한다)으로 위촉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(이하

"보호시설"이라 한다)에서 보호동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1. 수의사 또는 동물보호단체의 회원
  2. 동물의 사육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
- 제5조(임무) 관리인은 보호시설을 관리하고 보호동물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한 사육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6조(해촉) 구청장은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임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임무수행능력이 없을 때
2. 보호업무에 관한 구청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

3.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7조(위탁보호) ① 구청장은 관리인을 위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, 동물을 예호하는 자, 동물보호단체 등에 유기동물의 보호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③ 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임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④ 구청장은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8조(감독)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건강상태와 관리상태를 수시로 감독하게 한다.

제9조(소요경비 지급)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에 관련된 포획인부의 노임, 관리인의 수당, 공수의의 진료비, 위탁보호 수수료 등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

| 제10조(소요경비의 정수) ① 구청장은 보호 조치 중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.   |                    |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 경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경비의 내역을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<br>부 칙<br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(별표 1) 소요경비 산출기준표(제9조 및 제10조제1항 관련)</b>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사료급여 기준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동 물 명</th><th>규 격</th><th>사 료 급 여 양 (1마리/1일)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개</td><td>10kg 이하<br/>10kg 초과</td><td>전용사료 300g 또는 풍조림 300g<br/>전용사료 600g 또는 풍조림 600g</td></tr> <tr> <td>고양이</td><td>-</td><td>전용사료 300g 또는 풍조림 300g</td></tr> </tbody> </table> |                    |   | 동 물 명 | 규 격 | 사 료 급 여 양 (1마리/1일) | 개 | 10kg 이하<br>10kg 초과 | 전용사료 300g 또는 풍조림 300g<br>전용사료 600g 또는 풍조림 600g | 고양이 | - | 전용사료 300g 또는 풍조림 300g |
| 동 물 명   | 규 격                | 사 료 급 여 양 (1마리/1일)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개   | 10kg 이하<br>10kg 초과 | 전용사료 300g 또는 풍조림 300g<br>전용사료 600g 또는 풍조림 600g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고양이   | -                  | 전용사료 300g 또는 풍조림 300g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비고: ① 위의 기준표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리인 또는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사료의 종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.<br>② 기타의 동물에 대한 사료급여기준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별도 고시한다.<br>③ 사료첨가제, 식염, 기타의 무기물은 동물의 건강상태에 따라 충분한 양을 급여하도록 한다.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관리에 대한 수당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부노임 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.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위탁보호수수료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부노임 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포획인부의 노임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부노임 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.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치료비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의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승인한 금액으로 한다.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수송비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18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인가한 일반구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표를 적용한다.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  | 1992. 3. 23<br>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④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④ 서울특별시조례제2901호</b>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 조례증개정조례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8조 중 “문화담당관”을 “문화관광국문화과장”으로 한다.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  | 부 칙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  | 1992. 3. 23<br>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④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⑤ 서울특별시조례제2902호</b>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증개정조례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증개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
|  |  |
|--|--|
| <p>제 1643 호</p> <p>제3조제2항 중 “국무총리”를 “내무부장관”으로 한다.</p> <p>제4조제1항 중 “100억 원”을 “250억”으로 한다.</p> <p>제5조제2항 중 “국무총리”를 “내무부장관”으로 한다.</p> <p>제8조제1항 중 “국무총리”를 “내무부장관”으로 한다.</p> <p>제14조제2호 중 “국무총리의 사전승인”을 “시의회의 의결”로 한다.</p> <p>제21조제3항 중 “국무총리에게”를 “시의회에”로 한다.</p> <p>부칙 제2항제2호 중 “국무총리의 승인”을 “시의회의 의결”로 한다.</p> <p><b>부 칙</b>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경과조치)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(인가)받아 시행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(인가)받은 것으로 본다.</p> <p>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도로골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</p> | <p>1992. 3. 23<br/>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⑩</p> <p>1992. 3. 23<br/>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⑩</p> <p>서울특별시증기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<br/>서울특별시증기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</p> <p><b>부 칙</b>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체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</p>   |
| <p>1992. 3. 23<br/>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⑩</p> <p><b>◎서울특별시조례제2903호</b></p> <p>서울특별시도로골착복구기금설치조례</p> <p>조례중개정조례</p> <p>서울특별시도로골착기금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제1항 중 “전설관리국장”을 “도로국장”으로 한다.</p> <p><b>부 칙</b>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증기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</p>   | <p>1992. 3. 23<br/>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⑩</p> <p>1992. 3. 23<br/>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⑩</p> <p>서울특별시지하철공체조례</p> <p>서울특별시지하철공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명 중 “지하철”은 “도시철도”로 한다.</p> <p>제1조 중 “지하철도”를 “도시철도”로 하고, “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”을 “도시철도법”으로 하며, “지하철공체”를 “도시철도공체”로 한다.</p> <p>제2조 중 “지하철공체”를 “도시철도공체”로 하고, “국무총리”를 “내무부장관”으로 한다.</p> <p>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지하철공체”를 “도시철도공체”로 하고, “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”을 “도시철도법시행령”으로 하며, “지하철”을 “도시철도”로 하고, “지하철도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”을 “도시철도법”으로 한다.</p> <p>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“지하철공체”를 “도시철도공체”로 하고, “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”을 “도시철도법시행령”으로 한다.</p> <p>제5조 중 “지하철공체”를 “도시철도공체”로 한다.</p> <p><b>부 칙</b></p> |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.

1992. 3. 23

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②

**◎서울특별시조례제2906호**

**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증  
개정조례**

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증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7조 중 “한강관리사업소장”을 “한강공원 관리사업소장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제8조(징수교부금) ①구청장이 점용료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경비로 해당 구에 교부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 분기 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말 일까지 교부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면허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2. 3. 23

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②

**◎서울특별시조례제2907호**

**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  
징수조례증개정조례**

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 증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수수료의 기준) 수수료는 다음 산정 기준에 의 한다.

1. 수수료는 매립면허지를 기준으로 매립

면허를 받은 자에 의하여 조성될 매립지 가액에 1,000분의 15을 곱하여 산정한다. 매립지가액은 매립할 공유수면의 인접한 토지의 시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되, 그 시가는 매립면허일 현재의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토지의 폐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. 이때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가 도로, 하천 등 비과세토지인 경우 비과세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로 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2. 3. 23

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②

**◎서울특별시조례제2908호**

**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  
조례증개정조례**

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 증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제7조의2(징수교부금) ①구청장이 점용료 등을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로 해당 구에 교부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 분기 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말 일까지 교부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.

**규 칙**

제 1643 호

시

보

1992. 3. 23

서울특별시소송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을  
이에 공포한다.

1992. 3. 23

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⑩

● 서울특별시 규칙 제2457호

서울특별시소송사무처리규칙중

개정규칙

서울특별시소송사무처리규칙 중 다음과  
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 
한다.

①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 
폐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임의  
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 
면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폐소판  
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지  
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가집행 정지신  
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